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01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김형동・박정하・우재준

서범수 · 김소희 · 권영진

한지아 · 김위상 · 조지연

서일준 · 강대식 · 박덕흠

서지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천연가스버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대중 교통 이용객이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노선 폐지 등의 우려가 있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

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 70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
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 ①
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	
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	
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경감한	2026년 12월 31일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③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	
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	
고, 2021년 1월 1일부터 <u>2024년</u>	<u>2026년</u>

<u>12월 31일</u>까지 취득세의 100분 의 75를 경감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
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
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2월 31일
·.
4
<u>202</u>
6년 12월 31일